

## 8. 不實施工業體에 對한 處罰 大幅強化

資料提供：建設部

1. 건설부는 최근 LNG가스공사의 부실시공, 서울 독산동 호텔공사장 붕괴등 건설공사의 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부실시공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개정된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93년 12월에 개정된 건설업법에 의하면 금년 7월부터(공동주택은 3월부터)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하여는 면허를 취소하고 대표자, 현장기술자에 대하여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부는 최근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하여 서울시, 한국가스공사등 소관 행정기관에 건설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업체 제재절차를 조속히 밟도록 촉구하고 법에 규정된 최대한의 처벌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부는 '93년 12월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책임감리자가 엄격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부실이 판명되었을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재시공을 하도록 명령하는 등 감리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고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품질 및 안전관리, 감리점검을 전담케 하기 위하여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시험실 기능을 보강하여 기술관리국으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키로 하였다.

2. 한편, 건설부는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 발주기관의 일선 관리자급 400명을 대상으로 16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특별교육」를 실시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달하였다.

### 건설부가 이날 밝힌 대책에 의하면

- 첫 째,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대표자. 기술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건설업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토록 하고
- 둘 째, 금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책임감리제를 전면실시하여 공사중지명령, 재시공명령, 설계변경확인과 기성 및 준공검사 등 모든 실질적인 권한을 감리자가 행 하되 감리자가 감리자체를 부실하게 했을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계규정을 철저히 운영하며
- 셋 째, 부실시공이 불법하도급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례가 많음을 감안하여 일괄 하도급은 면허취소, 허위하도급은 6개월이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 넷 째, 시설물에 대한 질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자보수기간을 종래 3~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며
- 다섯째, 부실공사에 대한 업체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준공시 건설업체, 감리자 등을 명기한 영구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실시공업체에게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주기위해 공사부실기록을 작성,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입찰참가자격심사시 감점자료로 활용하며
- 여섯째, 민간아파트에 대한 형식적인 감리를 없애기 위해 종래 사업시행자가 직접 선정했던 감리회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등이다.

3. 건설부는 금년 7월부터 부실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취소하고 그 이전에도 처벌규정의 최대치를 적용하며 엄격한 감리를 통해 부실시공된 부분을 완전 철거, 재시공토록 조치하므로써 금년부터는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아울러, 건설부는 오는 2월 하순에 각 시·도 공무원과 건설·감리업체 직원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책임감리제도」의 정착을 유도하고 부실공사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이다.

#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추진계획

## 1. 경인주배관 보강공사

### 가. 현황

- 발주자 : 한국가스공사
- 시공자 : 삼환기업(주)
- 공사개요
  - 계약금액 : 218억(당초162억)
  - 사업량 : 가스배관 66.9%(반월-인천울도)  
공급기지 7개소(신설 2개소, 확장 5개소)

### 나. 조치현황

- 하도급제한규정위반 : 우리부에서 '94. 2. 3인천지검에 고발  
(처리결과 통보요청)
- 부실시공 : 인천지검에서 수사중이며, 한국가스공사의 제재처분요청에 따라 조치예정(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2. 엠베텔호텔신축공사

### 가. 현 황

- 발주자 : (주)엠베텔 대표이사 서정호
- 시공자 : 우재건설(주) 대표이사 강대엽
- 공사개요
  - 계약금액 : 2,365,000천원(1차 토목공사)
  - 사업량 : 지하굴토(깊이 27M) 토량 약80,000m<sup>2</sup>  
토류벽 1식

## 나. 조치현황

- '94. 2. 4 : 서울특별시장 제재처분요구
- '94. 2. 8 : 청문출석통지(청문예정일 : '94. 2. 25 14 : 00)
- 제재처분예정 : '94. 3초(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및 추진현황

- 건설업체에 책임의식 부여를 위해 부실시공 업체, 대표자, 기술자에 대한 처벌강화

#### 〈주요내용〉

- 업체 : 영업정지(6월)→면허취소
- 대표자, 기술자 : 불제재→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추진현황〉

- 공공시설 : '94. 7부터 시행
- 공동주택 : '94. 3부터 시행
- ※ 건설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개정 : '93. 12

- 주요공사에 대해서 시공능력있는 업체에게 입찰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제도)도입

#### 〈주요내용〉

- 대상공사 :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14개 주요공종
  - －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 댐, 터널, 발전소, 간척, 준설, 쓰레기소각장,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항만, 공항, 교량(길이 100m 이상)

#### 〈추진현황〉

- 기 시행('93. 7부터)

- 건전한 하도급관행 정착유도를 위해

“부대입찰제 시행”

### 〈주요내용〉

- 목 적

-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제출시 산출내역서에 입찰금액을 구성하는 공사중 하도급할 부분, 하도급금액·하수급인등 「하도급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견적능력 제고, 전문건설업체 육성, 하도급거래의 양성화 유도
- ※ 철도, 항만, 지하철, 고속도로 등 PQ대상공사와 동일

### 〈추진현황〉

기시행('93. 10부터)

#### “하도급 직불제 시행”

### 〈주요내용〉

- 대상공사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발주 건설공사중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예가의 85%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하도급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가능

### 〈추진현황〉

기시행('93. 6부터)

※ 건설업법시행령 '93. 6 개정완료

#### “불법하도급 제재강화”

### 〈주요내용〉

- 일괄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화
- 일괄하도급 : 영업정지(1년이내)→면허취소
- 허위보고 : 과태료(250만원이하)→영업정지(6개월 이하)

### 〈추진현황〉

- '94. 7부터 시행

※ 건설업법 '93. 12개정

● 감독과 감리업무를 감리원에게 일원화하기 위해 책임감리제 도입

〈주요내용〉

- 감리원의 권한
  - 시공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조치가 가능
  - ※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에 불응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감리원에게 설계변경확인권 및 기성, 준공검사권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
- 감리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강화)
  - 감리회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손해배상 책임 및 5천만원이하 벌금(양벌규정)
  - 감리원: 자격취소 요구,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및 수뢰등으로 형법 적용시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

〈추진현황〉

- 기 시행('94. 1부터)
  - '94. 1~2: 기존 23개 책임감리회사 활용
  - '94. 3부터: 전환등록 후 본격시행
- 감리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감리비에산의 제도화

〈주요내용〉

- 용지비, 시설비, 감리비를 분리제상
- 감리대가 상향조정(100억원의 경우 1.4%→4.1%)

〈추진현황〉

- 기 시행('94. 1부터)
- 건설한 감리회사 투입을 위해 민간아파트에 대한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선정

〈주요내용〉

-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감리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

〈추진현황〉

- '94. 3부터 시행
  - ※ 주택건설촉진법 '93. 12개정
- 시공후에도 장기간 질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자보수기간 연장

〈주요내용〉

- 3~5년→최대 10년

〈추진현황〉

- 공공시설 : '94. 2부터 시행
- 공동주택 : '94. 3부터 시행
- 민간건축 : '94. 7부터 시행
  - ※ 주택건설촉진법, 건설업법 개정 : '93. 12.
  -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 : '94. 2. 예정
- 부실공사를 시행한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주요내용〉

- 공사부실기록 유지·배포 및 사전입찰자격심사시 감점
  - 대상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받은 업체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업체

〈추진현황〉

- 기 시행 ('93. 9부터)
- 명예를 건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

〈주요내용〉

- 건설업체, 설계자, 감리자, 시공기술자 명단의 영구부착  
(공공공사의 경우 30억원이상)

〈추진현황〉

- 공공시설 : 기 시행
- 민간시설 : '94. 7부터 시행
  - ※ 건설업법 개정 : '93. 12